

직업능력개발계좌제 추진계획(안)

2008. 9

노동부
직업능력정책관

I. 직업훈련체계 개선 필요성 및 방향

- '67년 직업훈련법 제정('76년 훈련의무제 도입)과 함께 도입된 직업훈련은 기능인력양성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
 - ※ 60년대 : 工高 육성, 공공훈련기관 설립을 통해 정부주도의 기능인력 양성
 - ※ 70년대 :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대기업에 인력양성 의무부과
- 이후 기술진보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,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개인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한 평생능력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제도를 시행
 - ※ '95년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종래 직업훈련의무제는 고용보험제도하의 직업능력개발사업(사업주, 근로자, 실업자훈련 지원 프로그램)으로 전환
 - ※ '97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(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) 제정

◇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◇

	개인지원방식	사업주지원방식
실업자	전직·신규실업자훈련, 취약계층훈련, 우선선정직종훈련 등	사업주 능력개발 지원사업 중 채용예정자 훈련,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중 양성훈련 등
재직자	근로자수감지원금, 능력개발카드제 등	사업주 능력개발 지원사업,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,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등

- 개인지원방식 : 실업자·재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훈련수강시 비용 지원
- 사업주지원방식 : 사업주가 재직자(실업자)를 자체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시 비용 환급

- 그러나 공급자(훈련기관) 중심의 훈련전달체계, 대기업·정규직 위주의 재정지원(참여기회 양극화, 낮은 훈련참여율), 현장과의 괴리등 문제점 노정
 -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인력수요, 근로자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전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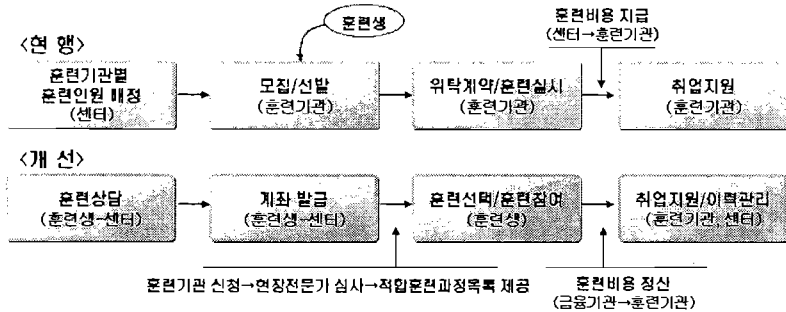
⇒ 근로자의 훈련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직업능력개발계좌제」를 도입·추진하는 한편,

산업 인력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직업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추진 필요(별도)

- 우리부 국정과제인 “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”의 핵심적인 내용임

II. 「직업능력개발 계좌제」 주요 내용

◆ **직업능력개발 계좌제** : 근로자(구직자 포함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,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



□ 상담·계좌발급

○ (대상)

1단계('08하~'09)	2단계('10)	3단계('11)
일부 전직·신규실업자 시범실시	비정규직 근로자 (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통합)	중소기업 근로자

- 상담을 통해 훈련직종(취업희망분야)을 협의·선정하고 계좌 발급
※ 현행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인력 부족→센터내 인력 재배치,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가용 상담인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 후 인력보강 검토

○ (지원수준) 1인당 200만원까지 실훈련비(현행은 정부표준훈련비 기준) 지원 및 교통비·식비 별도 지원

- 훈련비의 20%는 훈련생이 부담토록 하여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

※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저소득자 등의 경우와 국가기간산업과 같이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은 자부담 면제, 인력과인공급 직종은 자부담율 확대 등 차별화 검토

○ (계좌형태) 신용/체크카드 방식을 도입, 결제 및 출결관리 기능 부여

- 훈련비용 산정·지급업무를 금융기관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 경감 → 동 역량을 상담 및 훈련기관 지도·감독 등에 집중

※ 공모절차를 거쳐 제휴금융기관으로 (주)신한카드사를 선정

□ 정보제공 및 훈련선택

○ (적합훈련과정) 산업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훈련과정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「적합훈련과정목록」(ETPL,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)을 제공

○ (정보제공) 직업훈련정보망(HRD-net)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훈련과정 내용, 시설·장비·교사, 취업률, 훈련생 만족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지원

- 사전규제 완화를 통해 우수한 민간훈련기관의 보다 많은 참여 유도

□ 훈련실시 및 사후관리

○ 부정발생시 제재처분을 엄격 적용하고, 훈련기관 지도·점검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철저

※ 신용카드를 통한 출결관리로 대리출석 등 부정행위 예방 기대

III. 기대효과

○ (훈련생) 훈련시장의 서비스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

- 훈련상담,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훈련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

○ (훈련기관) 정부지원훈련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시장의 확대 및 경쟁 강화

- 정해진 물량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필요없이 경쟁력있는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훈련운영 가능

○ (정 부) 훈련비 일부 자부담, 지원한도 제한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훈련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

- 신용카드를 활용한 훈련비용 지급 프로세스를 통해 지방관서의 훈련비 신청·지급업무 부담 완화

<계좌제 도입 전·후 비교>

구 분	현 행	개 편
	<공급자 중심>	<수요자 중심>
지원체계		
공급기관	한정된 공급기관	다수의 공급기관
훈련프로그램	표준화된 훈련과정 ※ 6개월, 1년 단위로 획일화	다양한 훈련과정 ※ 훈련기간의 다양화로 필요훈련 조합
수요자 지원	훈련상담, 정보제공 미흡	훈련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
지원방식	참여횟수 제한방식	지원금액 한도 설정방식 ※ 일장비율 본인부담을 통해 책무성 강화
지원수준	표준 훈련비단가 기준	(훈련서비스) 시장가격 기준

IV. 시범사업 및 준비일정

□ 전산망 등 안정성 시험('08.9~12)을 거쳐 전국단위 시범실시('09년중)

○ 기존 실업자훈련 방식과 병행, 훈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

구 분	1단계('08.9~12)	2단계('09년중)
적용범위	전직+신규실업자	전직+신규실업자
실시지역	대구·광주지역	전 국
비 고	계좌발급시스템, ETPL 등 시험운영, 상담 프로세스 작동여부, 전직/신규 특성 파악 등	훈련수요·공급 등 제도 전반적인 분석 등

• 훈련생·기관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

□ 추진체계

주 체	주 요 기 능
노 동 부	훈련상담 및 계좌발급, 자금집행, 부정행위 모니터링 등
한국고용정보원	HRD-net 개편(계좌제 시스템 구축) 및 WORK-net, 고용보험 전산망 등과 연계, 금융기관과 연계한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지원, 훈련정보 제공 등
신한카드사	HRD-net 출결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훈련비용 정산시스템 구축, 계좌카드 발급
한국직업능력 개발원	적합훈련과정(ETPL)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계좌제 관련 연구·자문 등 정책수립 지원, 시범사업 정책모니터링 등

□ 향후 추진계획

- 훈련기관, 지방관서 등 홍보 및 설명회 : '08.8~9월
- 정보제공/이력관리 전산망 개편 : '08.8~9월
-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목록(ETPL) 마련 : '08.9월
- 상담 및 계좌발급 실시 : '08.9월~